

---

서울대학교 지역·공간분석학 융합전공  
4단계 BK21

지방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지역 협력리언스 융합인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

---

2025. 8. 29. 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지역·공간분석학 융합전공 4단계 BK21 지방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지역 레질리언스 융합인재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연구단의 구성)**

교육연구단은 서울대학교 지역·공간분석학 융합전공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 **제3조 (교육연구단장)**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전반적 사업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교육연구단을 대표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본 규정에서는 4단계 BK21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된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
2. 참여교수 등의 명단
3. 교육연구단명 변경
4.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5. 각종 교육연구단의 실적 및 성과 등

##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소속 전공(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전공,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전공, 아동가족학과)에서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맡는다.

② 위원장은 위원을 임면하며 위원회의 소집 및 회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기준
2.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4.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지원, 장기해외연수 대학원생의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운영규정 심의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한다.

#### 제5조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 ① 참여교수 선정은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자격요건에 준하여 선정한다. 교육연구단은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참여교수는 학과 재직 교수의 퇴직, 신임 교수 임용, 질병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체할 수 있다.
- ③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한 연장 요청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⑤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 ⑥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2.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 제6조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 ① 교육연구단장은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이 우수하거나 교육연구단에 대한 정성적 기여가 높은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연구단에서 별도로 제정한 <부록 1.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② 월 정기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다.
- ③ 성과급 지급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성과급 예산의 잔액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사업비에서 1인당 연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성과급을 집행한다.

#### 제7조 (신진연구인력)

- ①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약교수(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을 뜻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총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와 자격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운영규정 및 본교 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며 교육연구단 운영 사업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명시된 신진연구인력의 외부 활동을 허용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하며 월 300만 원 이상(퇴직금, 4대보험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신진연구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⑦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다음의 연구실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SSCI/SCIE/A&HCI 등재학술지 논문 1편 이상/년 게재
  2. Scopus/ESCI/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논문 2편 이상/년 게재

#### 제8조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 ①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전일제 학생(4대보험 미가입자)으로서, 등록 학기 기준으로 석사 2년, 박사 4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단, 기간 산정 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을 제외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4단계 BK21 사업 관련 연구지원금(장학금, 국제화경비, 기타 연구지원금 등)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자격
  2.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지도를 받을 권리
  3. 기타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
- ③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매학기 참여대학원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
  2. 교육연구단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3.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
  4. 취업, 휴학 등 참여대학원생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의무
- ④ 참여대학원생 중 아래의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원대학원생으로 한다.
1. 석사과정 또는 석사 수료생 (입학한 지 2년 이내): 월 100만 원 이상
  2. 박사과정 (입학한 지 4년 이내): 월 160만 원 이상
  3. 박사수료 (입학한 지 4년 이내): 월 130만 원 이상
- ⑤ 지원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수혜를 위해 아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의무
  2. 두 번째 지원학기 이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할 의무
  3. BK21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SSCI/SCIE/A&HCI 등재학술지(박사과정, 박사수료) 또는 Scopus/ESCI/KCI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할 의무(석사과정)
  4. 취업, 휴학 등 연구장학금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의무

- ⑥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논문실적/학술대회 발표실적/연구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여교수들의 승인에 따라 선발한다.
- ⑦ 지원대학원생의 월별 장학금은 논문실적/학술대회 발표실적/연구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제9조 (국제화경비 지원)

- ① 국제화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장기 해외연수(15일 초과), 단기 해외연수(15일 이내, 국제학술대회 포함), 해외학자 초빙 등의 항목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② 여비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해외연수는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연간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3. 장기 해외연수 선발은 교육연구단의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연수계획서는 교육연구단이 공지하는 지정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장기 해외연수 완료 후 참여대학원생은 결과보고서를 연수 완료 한 달 내로 제출해야 하며, 교육연구단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연수 과정에서 사용한 증빙 영수증, 해외연수 증빙자료(사진 등)을 함께 제출한다.
  5.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참여대학원생은 연수 종료 1년 이내에 Scopus/ESCI/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 혹은 SSCI/SCIE/A&H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④ 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해외연수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기준을 준수하는 행사(해외 기관으로의 15일 이내의 단기 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2. 해외기관으로의 단기연수 지원은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해외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는 수시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교육연구단의 학술대회 참가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참가계획서는 학술대회명과 일시 및 장소, 발표 주제, 초록 등을 포함한 소정의 양식을 갖춘다.
4. 부실학회 참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록 2. 국제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에 부실학회 여부를 점검한다.
5.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해당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한하여 연간 1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교수가 참여대학원생과 공동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6. 단기 해외연수 완료 후 참여대학원생은 결과보고서를 연수 완료 한 달 내로 제출해야 하며, 교육연구단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연수 과정에서 사용한 증빙 영수증, 해외연수 증빙자료(사진 등)을 함께 제출한다.

⑤ 해외석학 초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석학 초청은 되도록 본 교육연구단의 주제와 부합되도록 한다.
2. 특강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규정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이 결정한다.
3. 해외석학의 체재 기간은 활용 내역에 따라서 계상한다.

## **제10조(업적산정기간 및 범위)**

- ① 교육연구단은 우수한 성과 달성을 및 실적 관리를 위해, 교육연구단 소속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 산정을 수행하여 이를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참여인력은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매년 2월 말, 8월 말까지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업적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업적산정 방법)**

- ① 업적산정항목은 학술지 논문, 저서,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수주, 석박사 배출 실적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지 논문 실적: 산정기간 내에 최종출판된 Scopus/ESCI/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후보)학술지, SSCI/SCIE/A&HCI 등재학술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고 IF는 발표된 가장 최근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저서 실적: 저서 실적은 산정기간 내에 출판된 국내외 저서를 제출하되 학술서적만 인정한다.
3. 학술대회발표 실적: 학술대회발표 실적은 산정기간 내에 개최된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증빙자료로 학회발표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연구과제 수주실적: 산정기간 내에 연구비가 입금된 연구과제에 한해 인정하며, 실적산정은 과제 개시일로 한다. 교내 연구비는 제외한다.
5. 세부 배점 기준은 <부록 1.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 기준>을 참고한다.

## **제12조 (부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교육연구단의 심의를 거쳐 재·개정할 수 있다.
- ②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규정을 따른다.

## [부록 1]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배점)	
연구	참여교수 저서/논문 게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저서/SSCI/SCIE/A&amp;HCI = 5점/건</li> <li>- SCOPUS/ESCI/국내저서/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 3점/건</li> <li>-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2점/건</li> <li>-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1점/건</li> </ul>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관 연구비 = 1점/천만원</li> <li>- 해외기관 연구비 = 2점/천만원</li> </ul>
	학술행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학술대회/심포지엄/세미나/콜로키움 = 5점/회</li> <li>- 국내 학술대회/심포지엄/세미나/콜로키움 = 3점/회</li> <li>- 연구단 자체 세미나/콜로키움 = 1점/회</li> </ul>
	참여교수 학술대회 발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학술대회 발표 = 2점/건</li> <li>- 국내 학술대회 발표 = 1점/건</li> </ul>
교육	지도대학원 생 저서/논문 게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저서/SSCI/SCIE/A&amp;HCI = 5점/건</li> <li>- SCOPUS/ESCI/국내저서/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 3점/건</li> <li>-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2점/건</li> <li>-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1점/건</li> </ul>
	지도대학원 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학술대회 발표 = 2점/건</li> <li>- 국내 학술대회 발표 = 1점/건</li> </ul>
	석·박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 = 5점/인</li> <li>- 석사 = 3점/인</li> </ul>

\* 참여교수와 지도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저서/논문실적을 달성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이는 각각 ‘지도대학원생 저서/논문게재실적’, ‘참여교수 학술대회 발표실적’으로 산정한다.

\* ‘저서/논문게재실적’과 ‘지도대학원생 저서/논문게재실적’, ‘지도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배점의 경우 연구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정한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

\*\* 단독연구: 200%, 2인 공동연구: 170%, 3인 이상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70%

\* 참여교수가 과제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수주한 경우, 해당 실적의 배점은 200%로 적용한다.

\* 학술행사 조직은 주제 확정, 발표자 및 행사장 섭외, 홍보 활동, 행사 진행, 사후관리(결과 보고서 작성, 행사 결과 분석 참가자 설문조사 등)와 같은 행사 운영의 전반을 의미한다.

\* 위 모든 사항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들의 SSCI/SCIE/A&HCI 게재학술지당 분야별 최근 JIF Percentile을 합하여 실적을 재산정한다.

(JIF Percentile은 <https://jcr.clarivate.com/>의 Rank by Journal Impact Factor를 참조한다.

여러 분야의 JIF Percentile가 존재할 경우, 가장 높은 분야의 JIF Percentile을 적용한다.)

## [부록 2] 국제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사항

- ①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②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③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④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 ⑤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상세한 점검을 위해 Think/Check/Attend 캠페인(<https://thinkcheckattend.org>) 참고